

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(제28조 관련)

1. 설치기준

- 가. 제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.
- 나.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여야 한다. 다만,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.
- 다.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.
- 라.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, 운반 도중에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.

2. 운영기준

- 가. 가축분뇨의 저장·처리장소에는 쥐 및 파리·모기 등 해충이 발생·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나. 가축분뇨를 저장·처리하거나 재활용(판매등을 포함한다)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·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「악취방지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.
- 다.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라.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·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마.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바.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사. 처리시설로부터 생산되는 퇴비·액비의 성분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검사 또는 분석하거나 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

아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리대장에 퇴비·액비 관리내역 및 액비 살포내역을 기록하고,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

- 1) 가축분뇨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
- 2) 퇴비·액비를 생산·처분(사용·판매 등의 목적으로 외부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)하는 경우
- 3)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

자.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·스컴(scum)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,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

차.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초지 또는 농경지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(토지소유자로부터 액비의 살포동의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게 미리 액비의 살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